

V. 선·해임신고 제출서류

1 전기안전관리자 선·해임신고 제출서류

○ 법적근거 :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

가. 선임신고서

선임구분	선·해임 신고서류	비고
직영선임 (소유자·점유자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15호서식] 2.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. 재직증명서 원본 4. 실무경력증명서 원본 (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) 	※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자로 안전관리보조원 선임 시 “실무경력증명서” 제출면제
직영선임 (전기공사업자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15호서식] 2.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. 재직증명서 원본 4. 실무경력증명서 원본 (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) 5.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※ 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 불가함 ※ 신축현장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	
위탁선임 (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15호서식] 2.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.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※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	
위탁선임 (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15호서식] 2.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.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※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	
위탁선임 - 전기안전공사 - 대행사업자 - 개인대행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16호서식] 2.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※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	